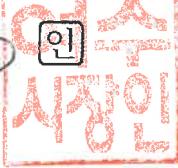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 월 31 일

여 수 시 장 *MG/MO* 

여수시 조례 제1983호

붙임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83호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여수시장” 을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교육복지국장, 수산관광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교통관련” 을 “교통 관련”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칙 별표 1” 을 “법 시행규칙 별표 1”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교육복지국장, 수산관광국장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교통 관련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과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 ----- -----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1. ----- -----.

<p>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p>	<p>-</p> <p>법 시행규칙 별표 1-----</p> <p>-</p> <p>-</p>
<p>2. ~ 5. (생략)</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별지 제1호 서식</p> <p>-----</p> <p>-</p> <p>-</p> <p>-</p>
<p>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p> <p>-----</p> <p>-----</p> <p>-</p> <p>-----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 ~ ⑦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